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고 제2025-3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허정미 의원 대표발의, 윤구영 의원 공동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개발사업 추진을 원하는 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사업 자문위원회와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을
설치하여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분쟁, 갈등 해결을 지원
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범위 및 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 안 제4조)
- 자문위원회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안 제6조)
-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안 제7조 ~ 안 제8조)
- 간사 등 및 안건제출 등(안 제9조 ~ 안 제10조)
- 자문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안 제11조 ~ 안 제12조)
-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 설치 및 기능·구성 등(안 제13조 ~ 안 제14조)
-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안 제15조 ~ 안 제16조)
- 전담조직 및 비밀준수의무(안 제17조 ~ 안 제18조)
- 수당 등(안 제1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회장 (참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전화 032-509-7028 / 팩스 032-509-76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붙임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개발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제4조(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정체요인 분석 등을 통한 방향성 제안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관련 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립승인, 조합 운영 등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의 분쟁, 갈등의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평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개발사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
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마. 그밖에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된 위원 및 간사·서기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
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문위원회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위원회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위원회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자문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안전제출 등) 구청장은 개발사업 관련 업무 중 구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본청의 실·과장을 통하여 자문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위한 안전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개발사업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

제13조(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구역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자문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관련 행정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수요조사 및 배치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 조성 사업비 검토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 조성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 지구 품질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① 지원단은 총괄부서, 개발사업 인허가부서, 공공시설
발주·관리부서 담당 팀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분야별 고급기술자 이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고급기술자를 말한다.)
2. 해당 분야별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인천시(군·구 포함) 시설직 6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컨설팅) ① 지원단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인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지역의 조합가입

대상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신청서 제출일 30일 이내에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접수된 컨설팅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처리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6조(가이드라인) 부평구 관내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조성에 대하여 사업 관계자(공무원, 개발사업자, 조합 등을 말한다)
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참고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조(전담조직)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와 지원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행정기구 내
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회 및 지원단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제19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하는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 및 참고인과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회의안건 제출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안건 번호	제 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 안 건 명 :

○ 현황 및 추진개요

-

-

-

○ 협의(토의)내용

-

-

-

○ ○ ○ ○ 위원회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안전번호	제 호	구분	(정책제안, 자문)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 건 명			
운영상황 (주요내용)			
운영결과			
위와 같이 운영(정책제안, 자문) 하였고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직위/직급	성 명	서 명	의 견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컨설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조합·법인 번호)		신청 구분	☐ 조합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기타()
	주 소	(전화번호:)				
사업개요						
자문신청 분 야						
신청내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신청 내용 파악
○ 수집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개발사업 컨설팅 완료 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컨설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신청 내용 파악
○ 수집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개발사업 컨설팅 완료 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컨설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자필서명)

관련법령 발췌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시기, 협의 대상·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구획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등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사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개정 2017. 8. 9.>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⑧ 제7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